

정보공개규정

13차/전부개정 2026-8-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사가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개 대상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청구가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정보를 취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정보공개 의무

제4조(정보공개 관련 의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적절한 공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하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 제도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절차 및 불복절차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공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보공개시스템(이하 “K-CRM”이라 한다)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부서의 장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4.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5. <삭제 2014.08.01> <신설 2011.12.26 >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7. 국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8. 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9. 반복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 10.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11.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안내와 상담편의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9호에서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목록은 과거의 정보공개 청구 현황을 고려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2(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의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전공개 대상 정보를 성실하게 공표하는지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부서의 장의 시정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원문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관리하고 그 목록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목록 중 「직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임원 결재문서

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을 통하여 원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문 또는 첨부문서에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첨부문서 등을 제외하고 부분으로 공개하는 등 공개의 범위를 조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부당한 처리에 대한 조치사항)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업무 처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의 의사결정자에 대한 징계 관련 감사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정보를 고의로 공개하는 경우
2.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결과에 따라 공개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고의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8조(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서를 제출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사의 K-CRM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등록된 정보공개 청구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로 분류하되, 청구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부서를 지정하며, 청구서는 지정된 관리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K-CRM으로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고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사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이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

2.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

제11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 및 공사의 K-CRM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이 정보의 원본을 청구한 경우,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 및 공사의 K-CRM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8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사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사가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공사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K-water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공개) ①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

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정보

제15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며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삭제 <2008.8.14>
4. <삭제 2011.12.26>
5.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 50퍼센트
2. 삭제 <2008.8.14>
3. <삭제 2011.12.26>
4. 제4항제5호에 해당할 경우 : 100퍼센트

제17조(이의신청)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비공

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공사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별지 제3호서식의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의회 개최여부 및 개최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포함)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 및 공사의 K-CRM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8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내부위원은 송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또는 사내 변호사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소속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 된다.

⑧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업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자문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심의회의 개최 및 절차)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검토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되 심의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만 결정권을 가진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

다.

1. 안전의 내용이 특별히 토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적기에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3. 자연재해,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심의회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간사는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물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서면심의회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그 회의록으로 한다.
- ⑧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공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사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21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괄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공사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마.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 바.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삭제 2014.08.01> < 신설 2011.12.26 >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관리부서 등의 심의회 설치·운영)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밖에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5장 이의신청 <삭 제>

부칙 (2005.01.0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8)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3)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이 규정은 2008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3)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2)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제4항과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8.01)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09)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6)

이 규정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27)

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30)

이 규정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6.07)

이 규정은 202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8.28.)

이 규정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VOC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내용		
의견 제출기간	20 년 월 일 (※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K-water 「정보공개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장 직인

【별지 제1호의2서식】 (제9조 제3항 관련)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VOC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 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 요청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비공개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장 귀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VOC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건물번호 등 상세주소는 작성 제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유의사항

1.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관련)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VOC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해당되는 곳에 √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18조 제6항 관련)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심의회 심의의결 대상 사항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심의회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심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심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심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K-water 「정보공개규정」 제23조 비밀준수 의무를 준수하여 심의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9조 제3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검토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정보공개 청구내용	청구제목	
	청 구 인	
	청구요지	
요구사유	관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사유	
검토의견	정보공개 심의사항에 대한 관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요약)	

「정보공개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공개 관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귀중

정보공개심의회 검토서

□ 심의안건 :

I.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주 소	
II. 정보공개 청구사항		
III. 부분·비공개 결정부서		
IV. 부분·비공개 결정경위		
V. 청구인 주장 및 관리부서 의견	◆ 이의신청인	
	◆ 부분·비공개 결정부서	

20 년 월 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대면심의용)

(20 년도 제00차 심의)

- ☐ 의안번호 : 20 - 00
- ☐ 심의일시 : 20 . . .()

안 건					
심 의 결 과	※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첨부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명
		인용 (공개)	일부인용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위 원 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 제7항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대면심의용)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 년도 제00차 심의)

I . 회의개요

요구부서		회의장소	
일 시	20 년 월 일 00:00 ~ 00:00		
참 석 자	심의회	위원장 〇〇〇 (인)	위 원 〇〇〇 (인)
		위 원 〇〇〇 (인)	위 원 〇〇〇 (인)
		위 원 〇〇〇 (인)	위 원 〇〇〇 (인)

II . 심의안건 주요내용

주 요 발 언 내 용	
참석자명	발언 요지
	(진행순서) 안건 보고, 개회, 제척·회피·기피 관련 규정 안내,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폐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서면심의용)

(20 년도 제00차 심의)

- ☐ 의안번호 : 20 - 00
- ☐ 심의일시 : 20 . . .()

안 건	
심 의 결 과	※ 위원별 서면의결서 첨부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인용 (공개)	일부인용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위 원 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의결서

(20 년도 제00차 심의)

- ☐ 의안번호 : 20 - 00
- ☐ 심의일시 : 20 . . .()

안 건			
심의의결	인용(공개)	일부인용(부분공개)	기각(비공개)
의 결 사 유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구 분	직 명	성 명	서 명
위 원			

기피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VOC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	
	여권·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기피신청 위원			
기피신청 이유	※ 필요시 소명자료 별도 첨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장 귀하